

대전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7342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1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
가.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상가 129.79㎡를 인도하고,

나. 6,000,000원 및 2024. 8. 15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,000,000원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박우근

별지